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5년 7월 30일(목)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박영삼 과장(044-203-4430), 김태훈 사무관(4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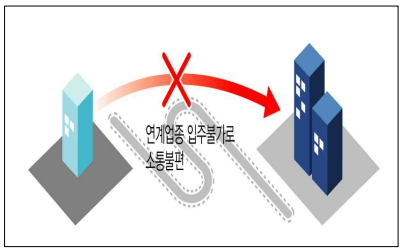
산업부, 현장 중심의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 입주업종 확대, 복합구역 활성화, 산업용지·지분 처분제한 완화 등 -
- 규제개선 통해 산업 융복합 촉진 및 공장설립 애로해소 등 기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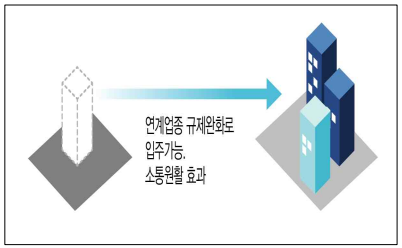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이하 산업부)는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 중심의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입주업종 확대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지정 활성화 △산업용지 처분제한 완화 △공장설립 지원시스템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 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늘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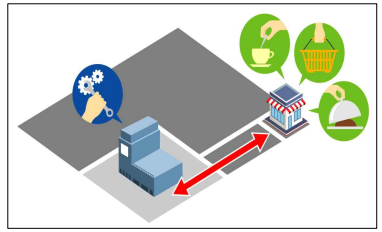
〈기존〉



〈개선〉

- **(현행)**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은 일부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기타 제조업 연관업종으로 **제한**
- **(개선)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융복합 유망업종** 등의 입주 **추가 허용** (지식산업 5개 내외 추가 허용, 추후 소극적(negative) 규제방식 도입 검토)
 ☞ 산단 내 제조·서비스 **융복합 활성화** 및 유망 서비스업 육성 기대

② 산업단지가 융·복합 비즈니스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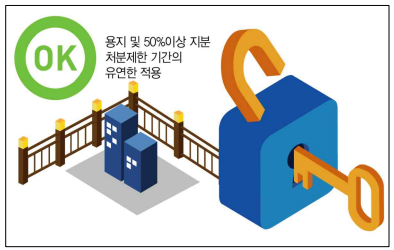

〈개선〉

- **(현행)** 노후산단은 공장·지원시설 간 이격 등으로 인해 **근로자·기업활동에 불편**
- **(개선)** 산단 내 **'복합구역' 지정을 활성화**하여, 공장과 문화·복지·교육·편의시설 등의 근거리 동반 입주를 허용 *복합구역: 산업·지원·공공시설의 동시 입주가 가능한 구역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충족이 가능한 융·복합 공간을 산단에 조성

③ 기업의 산업용지 처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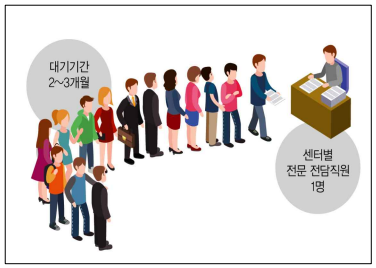
〈기존〉



〈개선〉

- **(현행)** 저렴한 산업단지 용지를 활용한 투기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설립 후 "5년간" 용지 처분을 제한**받음
 * 공장설립전, 혹은 5년내 처분 희망시, 관리기관에게 용지를 취득원가로 양도할 필요
 - 해당 기업이 **지분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도 산업용지 **처분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동등하게 규제
- **(개선)** (1)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처분제한기간(5년)의 유연한 적용**, (2)투기적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지분거래에 대한 제한 완화** 등의 제도개선 추진
 ☞ 입주기업 **용지거래에 대한 과도한 제한 완화**로 경영여건 개선

④ 공장설립 과정이 보다 쉽고 빨라집니다.



〈기존〉



〈개선〉

- **(현행) 공장설립지원센터**(산단공, 전국 14개소)를 통해 인·허가 대행 및 상담서비스 제공 중이나, 센터별 전담인력이 1명에 불과하여 **서비스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
- **(개선)** 현장에서의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인력 확충 추진**
 - ☞ 지원서비스 확대*를 통한 공장설립 **민원인의 편의·만족도 제고**

* 상담문의가 가장 많은 수도권 대상으로 민원상담 전화상담센터(콜센터: 1688-7277) 시범운영, 공장설립 행정절차 안내를 위한 블로그 (blog.naver.com/kicox12) 운영 등

□ 산업부 장관은「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및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의 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 **사회경제적 파장**이 크고 **추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의 경우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및 보완책 마련**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예시) ① **소극적(negative) 업종규제방식 도입** (산단 진입장벽 제거로 융복합산업 활성화 기대 vs 무분별한 업종난립으로 산단조성 목적인 산업집적 효과상실 우려), **②공장 설립완료 전 임대사업 일부허용** (협력사 등과 업무협조 원활화 vs 투기목적의 공장용지 과다보유 우려) 등

※ 붙임

1. 산업단지 운영활성화 및 공장설립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2. 주요 개선대책 현장사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태훈 사무관(☎ 044-203-44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주요 개선대책 현장사례

1 지식산업센터에 콜센터 입주를 허용, 고객 서비스 품질향상 및 고용창출에 기여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지식산업의 범위 확대')

○ 서울구로디지털산업단지 소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중소 제조업체 A社는 제품 판매 후 A/S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에 콜센터를 함께 설치해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상 '콜센터'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A社는 효과적인 고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 저렴한 분양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에는 산업의 집적효과를 확보하고 입주업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업 (지식산업, IT산업 등) 위주로 입주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 콜센터 등의 입주요청이 새롭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고용창출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융·복합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허용업종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단, 대부업체 및 다단계판매 등의 악용으로 유해성 우려가 큰 '통신판매업'은 제외)

○ 향후 법령 개정으로 콜센터 등 새로운 업종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A社는 고객에게 전화매체를 통해 제품관련 민원접수,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품질 개선과 고객만족도 제고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공장설립 인허가 서비스 확충으로 기업의 만족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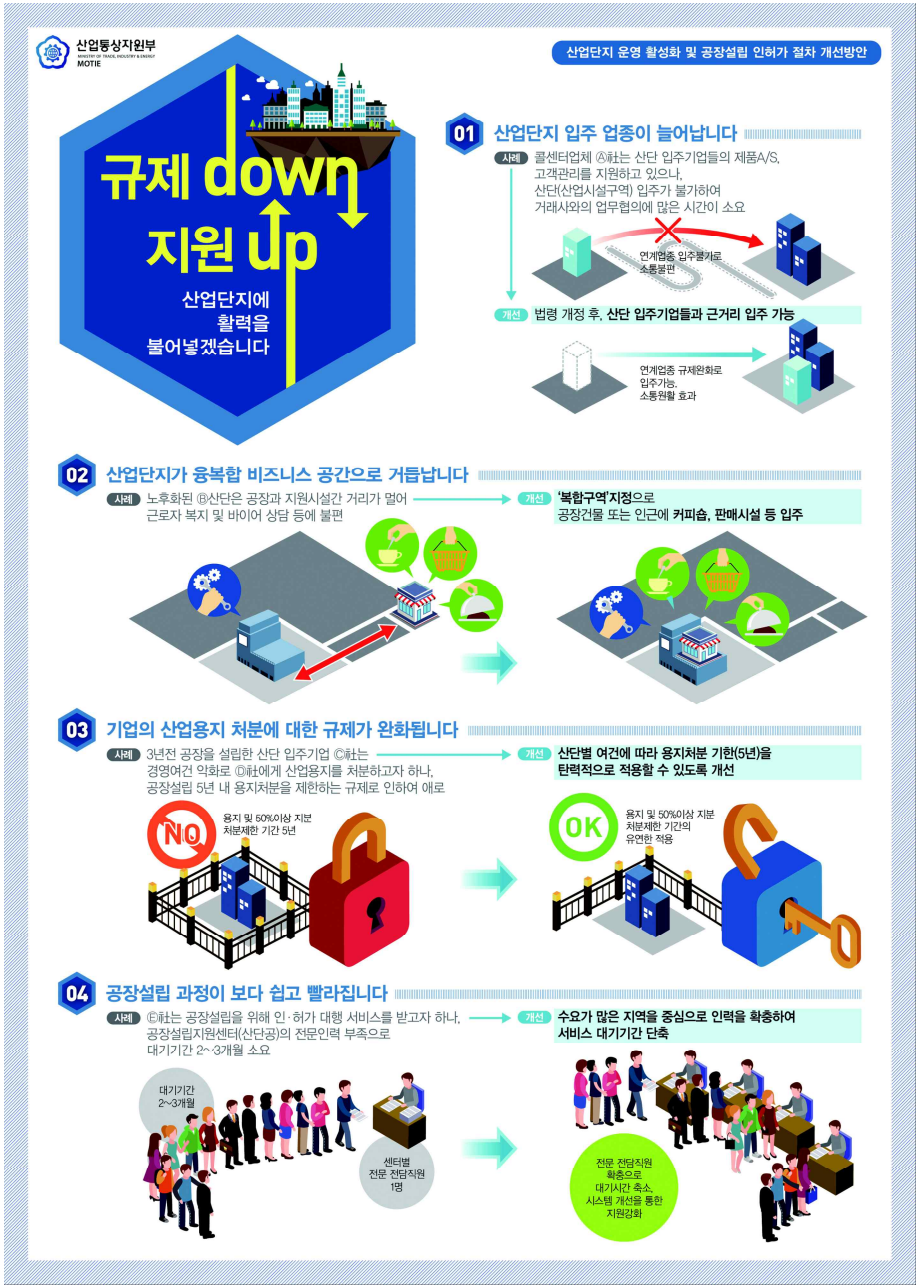
(민원상담 콜센터 시범운영 및 온라인 정보제공 확대 등)

○ 수도권 인근에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B社는 자체 전문인력 부족으로 공장 설립과 관련된 복잡한 법령을 검토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부담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따라 B社는 무료로 공장설립 관련 지자체 인·허가 대행, 상담 등을 지원하는 '공장설립지원센터'(산업단지공단)의 도움을 받아 불과 일주일 만에 공장설립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 현재 B社와 같이 공장설립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14개소에 설치된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인력과 규모 (센터별 전담인력 1명)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측량·환경 등 일부 전문분야 서비스는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인력확대가 추진됩니다. 또한 상담문의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민원상담 콜센터 (1688-7277)가 시범 운영되고, 공장설립 행정절차 안내를 위한 블로그 (blog.naver.com/kicox12)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지원체계가 확충되면 기업들이 공장설립과 관련한 서비스를 더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붙임2 인포그래픽



붙임3 산업단지 운영활성화 및 공장설립 인허가절차 개선방안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
('15.7.30(목) 16시 이후부터 보도가능)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및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

2015. 7. 30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Ⅰ. 개 요 1

Ⅱ. 세부 개선과제 2

1.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2
2.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4

Ⅲ. 과제별 추진일정 5

[참고] 그간 제도개선 현황 6

Ⅰ. 개 요

□ 추진경과

○ '13년 이래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장관회의, 산업부 자체 규제청문회('14.6) 등과 연계, 산업집적법 등 **산업입지 분야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

*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도입**, 용도변경 관련 **지가차익 환수부담 경감** 등의 성과 창출

○ 다만, 산업단지 진입시의 **업종 규제**, **산업용지 거래제한**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및 투자지연 등을 호소하는 기업이 여전히 존재

○ 이에 산업부는 **'규제개선 TF'**를 4월부터 운영, 산업입지 분야 **제도의 종합 검토** 및 **업계 체감도가 높은 개선과제**의 발굴 작업을 진행

- TF는 유관기관 및 전문가, 업계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 산업단지 입주규제* 및 행위제한**, 공장 인·허가 절차***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

* 업종 및 용도제한 ** 용지거래(처분·임대) 제한 *** 산단 입주절차, 공장 인·허가 등

※산업입지 규제개선 TF 구성
- 산업부 -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 산단공 등 유관기관
- 법률전문가(교수·변호사) - 업계 대표 (경제단체 포함) 등

□ 분야별 개선과제

○ 총 2개 분야, 6개 과제 개선 추진

분야	개선과제
산업단지 운영	▪ IT·융합서비스업 위주로 입주업종 확대 ▪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지정 활성화 ▪ 용지 처분제한기간의 유연한 적용 추진 ▪ 입주기업 지분처분에 대한 제한 완화
공장설립 인·허가	▪ 공장설립 인·허가 지원서비스 확충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도 제고

Ⅱ. 세부 개선과제

1 산업단지 운영 활성화

1 IT·융합서비스업 위주로 입주업종 확대

○ **(현행)**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능한 서비스업**을 **지식산업**(20종), **정보통신산업**(5종) 및 기타 **제조업 연관업종(12종)으로 제한**

- 지식산업: 연구개발업, 전문디자인업,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등
- 정보통신산업: SW 개발·공급업, DB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 제조업 연관업종: 폐기물 및 폐수처리업, 운송업, 창고업,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등

○ **(개선) 제품A/S 및 마케팅** 등 제조업 연계효과가 높은 업종, **융·복합 유망 서비스업** 등을 선별,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추가로 허용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10월)

- 현행 법령상 지식산업 등의 범위에 **5개 내외의 업종** 추가

* (예시) 광고대행업, 콜센터(통신판매업은 제외), 옥외 및 전시광고업, 사업시설 유지관리서비스업 등 제조업체 지원 및 홍보·고객관리와 관련깊은 업종

- 아울러 **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 여부 포함, 산단 **업종규제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12월)

* positive방식: 입주가 가능한 업종을 적시, 그 외 업종은 모두 입주를 제한
* negative방식: 입주가 제한되는 업종을 적시, 그 외 업종은 모두 입주를 허용

2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지정 활성화

○ **(현황) 근로자 여건** 개선 및 '제조+서비스' **융·복합 촉진**을 위해 **'복합구역' 제도를 산업단지에 도입**('14.12월 산업집적법 개정)

* 용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산업·지원·공공시설의 통합 입주를 허용**하는 산업단지 내 구역 (기존에는 산업·지원·공공시설구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

○ **(개선)** 융·복합공간*에 대한 **근로자 요구**가 높거나 **융·복합형태* 비즈니스**의 진입수요가 있는 산단 위주로 **'복합구역'을 본격 지정** (해당 산단의 관리기본계획 변경, '15.下)

* **융·복합공간**: 공장 인근에 문화·레저시설, 자기계발용 교육시설, 복지시설(어린이집 등), 각종 편의시설(마트 등)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를 지원

* **융·복합형태 비즈니스**(예시): ①공장용 건축물에 전시·판매용 시설도 함께 운영 ②사업장 건물에 근로자·방문객들의 교류를 위한 커피숍·세미나실 등 운영

- '혁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등 정부가 추진중인 **노후산업단지 개선 사업과도 연계**하여, 해당 사업 대상지부터 우선 지정 추진

- **수요조사**(8-9월) 후, 요구가 높은 산단부터 **복합구역 본격 지정**(-12월)

3 용지 처분제한기간의 유연한 적용 추진

○ **(현황)** 저렴한 산단 용지를 활용한 투기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은 공장설립 후 "5년간" 용지 처분을 제한**

* 산집법 제39조: 처분제한 기간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위임
* 산집법 시행령 제49조: 처분제한기간을 5년으로 규정

- 공장설립 前 또는 설립 後 **5년 내**에 용지처분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리기관에게** 해당 용지를 **취득원가로 양도**하여야 함

○ **(개선)**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처분제한기간(5년) 제도의 유연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12월)

- 일례로, **용지가격이 안정된 지역**부터 **선별적으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 등 검토

4 입주기업 지분처분에 대한 제한 완화

○ **(현황)**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그 **지분을 50% 이상 양도**할 경우 **산업용지 처분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 처분과 동등하게 규제

* 용지의 직접 처분과 동일하게, 공장설립前 및 설립後 5년 이내 처분을 제한받음 (지분거래를 통한 우회적인 산업용지 처분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 **(개선)** 용지처분규제 우회와 같은 **투기적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지분거래**는 제한을 **예외적으로 완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12월)

* 용지처분과는 무관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기업간 지분거래·M&A 등

2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개선

1 공장설립 인·허가 지원서비스 확충 (산단공)

※공장설립지원센터: 전국 거점별 14개소 설치, 무료로 공장설립업무 대행 ('07년부터 토목·환경분야도 일괄대행) 및 지자체 인·허가업무 지원
⇒ 지원센터 통해 신청할 경우, **공장설립승인까지 평균 10일 소요**

○ **(현황)** 산단공 **공장설립지원센터(전국 14개소)**를 통해 인·허가 대행 및 상담지원 중이나, **수요에 비해 센터 인력·규모**가 크게 부족

- 센터별 전문 전담직원이 1명에 불과하며, 측량·환경 등 전문분야는 소수의 인력(환경, 측량 각 3명)이 전국의 관련 민원을 대행

○ **(개선)** 현장에서의 서비스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전담인력** 또는 **전문분야 인력** 지원 **확대 추진**

- 아울러, 산업단지 내 입주·공장설립 행정절차 안내를 위한 블로그 운영 및 **민원 상담콜센터**(번호:1688-7277) 설치(수도권부터 시범운영)

* 민원수요가 많은 서울, 인천, 반월시화 중심으로 전문상담기관을 통해 산단 입주절차·공장등록 등과 관련한 애로해소 지원

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도 제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공장설립 승인 인·허가 절차의 전자처리를 통해 **①단일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한편('14년 공장등록증명서 1.7만건 발급), 인·허가 처리절차 및 등록공장 현황 등에 대한 **②유용한 D/B로서도 기능**

○ 정보의 유용성·신뢰성 및 개인정보 보호기준 등을 감안, 일반인이 시스템 통해 **열람 가능한 정보항목을 확대**(11→21개) (9월)

* (현행) 회사명, 용지면적, 종업원수, 업종 등
⇒ (개선) 자본규모, 공장규모 등 추가 (대표자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제외)

○ 자료의 단순 검색 및 열람을 넘어서, 이용자 필요에 따라 **자료의 맞춤형 추출·가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9월)

Ⅲ. 과제별 추진일정

세부 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1. 산업단지 운영			
1	IT·융합서비스업 위주로 입주업종 확대	시행령	'15.10월
2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지정 활성화	비법령	'15.下
3	용지 처분제한기간의 유연한 적용 검토	시행령	'15.12월
4	입주기업 지분처분에 대한 제한 완화	시행령	'15.12월
2. 공장설립 인·허가			
1	공장설립 인·허가 지원서비스 확대	비법령	'15.12월
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도 제고	비법령	'15.9월